

#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2010. 2. 8. 선 포

## 제 1 장 일반적 윤리

제1조 [목적]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은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윤리]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외국윤리의 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 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 [회칙준수 등] 외국법자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회칙, 규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상의 직무] 외국법자문사는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아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과대선전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선전 또는 업무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건의 유치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주선업자 이용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입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수입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증교사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 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6조 [성실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임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 [수임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과 친족 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자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인의 외국법자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제19조 [수임거절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비밀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외국법자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물건의 수수] 외국법자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문서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22조 [적정보수] 외국법자문사의 보수는 경제적 이익,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

- 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제23조 [서면계약] 외국법자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24조 [추가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조건부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보수전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교제용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증거조작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 [보수의 부당경쟁 규제]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보수분배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